

2023. 10. 26. 현재

# 정 관

학교법인 혜전학원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혜전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운영한다.

1. 청운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산업대학임)
2. 혜전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임)<개정 2012.3.1.>
3. 혜전대학교 부속 유치원<개정 2012.3.1.>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에 둔다.<개정 2012.2.21.>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3.8.28.>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자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7.7.2.>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7.7.2.>

제15조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삭제 2007.7.2.>

제16조 (회의) <삭제 2007.7.2.>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7.7.2.>

##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인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임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9.6.25.>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 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8.1.11.>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

제20조의 5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제20조의4제3항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청운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

<개정 2008.1.11.>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청운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평의원 2인
3. 해전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평의원 2인<개정 2012.3.1.>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개정 2008.1.11.>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개정 2008.1.11.>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필하며 법인의 수익사업과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

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를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1.11.>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2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를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15.>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15.>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를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2.8.>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1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

제31조 (이사회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 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3.>

1. 교원 3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조교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 (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 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5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6 (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1.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장
2. 임업 및 기타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혜전목장(낙농)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체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산로 29-37에 둔다.<개정 2012.2.21.>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1.>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6.25.>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한다.<개정 2009.6.25.>

##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1관 임 명

제39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한다.<개정 2016.06.15.>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관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17.>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7.21.>

2. 급여 : 정관 제46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강사 및 겸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06.24., 시행 2019.08.01>

④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9.6.25.>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⑥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의 2 (대학 교원 임용기간 계산) ①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기간은 재임 중에 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기간이 학기말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말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 파견 또는 국외출장이 만료되는 때는 그 파견 또는 그 출장 잔여기간까지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타 일반 휴직 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 3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대학에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 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 보장 교원 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 보장 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0조 (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개정 2016.06.15.>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6.06.15.>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2.2.2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8.1.1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8.1.11.>
11. 전공 전환이 필요한 때<신설 2008.1.11.>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 6의2. 제41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06.15.>
7.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1.11.>
9. 제4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1.11.>
10.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8.1.11.>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제1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기본급만 지급한다.<개정 2008.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11.>  
제45조(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 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2016.10.1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6. 12. 1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신설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12.14.>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12.1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4.>

제45조의 2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제외 한다.

② 정년이 달한 교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개정2018.08.29.>

제45조의 3 (명예퇴직수당 등)<조문신설 2012.12.13. 개정2023.10.26.>

①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3.10.26.>

②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원활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 조기퇴직하게 할 수 있다.<신설2023.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 4 (면직의 사유)<신설 2016.12.14.>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  
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2.8.>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 (당연퇴직의 사유) 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  
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②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하  
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  
직한다.

<신설 2023. 2. 8. 시행 2023. 6. 14>

제48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불량으  
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15.>

1의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06.24.,  
시행 2019.08.0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등의 보직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15.>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1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8.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6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목변경 및 개정 2016.10.10., 개정 2023.2.8.>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개정 2023.2.8.>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7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2인 (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0.10.>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10.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가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결 요구사유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제63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6.6.15., 개정 2023.2.8.>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2016.6.15., 개정 2023.2.8.>

④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2.8. 시행 2023.4.19.>

②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중인 관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12.10.>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66조의1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2. 8>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사 무 직 원

제69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 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4.12.1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1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1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1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개정 2014.12.10>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0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17.6.14.>

⑤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09.6.25.>

**제70조의1 (명예퇴직수당 등)일반직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정관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26.>**

제71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직 제

### 제1절 법 인

제75조 (법인사무 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고 국에 사무과, 관리과를 두되, 국장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 직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1.>

### 제2절 청운대학교

제76조 (총장 등) ① 청운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홍성캠퍼스 부총장, 인천캠퍼스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2.12.13.>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6조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13.>

⑤ 총장실에 직속기구로 감사실을 두며, 감사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2급이나 3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1.26., 개정2023.2.8.>

⑥ 제5항의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실장 및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실장, 부위원장, 센터장, 부장 또는 팀장 등을 둘 수 있다.<개정2013.8.28.>

제76조의 2 (대학원장 및 학장 등) ① 대학교의 대학원에 대학원장,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

② 대학원장과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각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기획처, 교무연구처, 학생처, 입학처, 대외교류처, 사무처, 교학처를 둔다.  
<개정 2022.01.26., 개정 2023.2.8.>

② 기획처장, 교무연구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대외교류처장,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2급이나 3급 직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22.01.26., 개정 2023.2.8.>

③ 제1항의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 센터장, 부장 또는 팀장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의 2 (대학원의 하부조직) <삭제 2013.8.28.>

제78조 (부속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16.6.15.>

1. 부속기관 : 교육혁신원, 취·창업혁신원, 학술정보원, 진로·심리상담센터, 인권센터, 청운학사, 청운방송국, 융합교육원<개정 2022.1.26., 개정 2023.2.8.>

2.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창업보육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개정 2022.1.26., 개정 2023.2.8.>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15.>

제79조 (학술정보센터) <삭제 2007.7.2.>

제79조의 2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흥성캠퍼스와 인천캠퍼스에 둔다. <개정2013.7.17.>

②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2급이나 3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13.8.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 3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직원 이상으로 보한다.<개정2011.12.21.>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관련학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7.1.>

### 제3절 혜전대학교

제80조 (총장 등) ① 혜전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개정 2012.3.1.>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을 대표한다.<개



정 2012.3.1.>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2.3.1.>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5.20.>

⑤ 삭제<삭제2016.3.16.>

⑥ 국고사업 및 지자체사업 수행을 위해 총장직속기구로 사업단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 또는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22. 6. 29.>

⑦ 제6항의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부단장, 부센터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29.>

제81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처**, 총무처, 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22., 2023.10.26.>

② 제1항의 조직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2., 2023.10.26.>

③ 제1항의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 부서를 둘 수 있다.<신설 2016.3.1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6.>

⑤ 제1항의 조직에는 부처장, 센터장, 부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9.1.30.>

제82조 (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9.1.30.>

1. 부속기관 : 학술정보원, 평생교육원, 해전방송국, 인권센터, 식품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개정 2021.12.22.>

2. <2019.1.30. 삭제>

② 부속기관에 각각의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1.30.>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9.1.30.>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0.>

제83조 (종합정보지원센터) <삭제 2016.3.16.>

제83조의 2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직원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1.>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관련학과(계열),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08.1.11.>

제83조의 3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직원 이상으로 보한다.<2011.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08.7.1.>

④ 제1항의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30.>

#### 제4절 혜전대학교부속유치원

제84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는 원장 및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지도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 (하부조직) 유치원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 7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1.>

## 제5절 정 원

제86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06.24.>

## 제8장 보 칙

제87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전일보에 공고한다.

제8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의2(청렴의무) 학교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4.27.>

제88조의3(행동강령) ① 제88조의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개정 2022. 6. 29.>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

3. 학교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본인 혹은 친·인척관계, 자신의 과거 경력, 본인 혹은 그 가족이 기업의 소유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해당 기관의 장은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학교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정관 제88조의3제1항과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29.>

제8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이 종 성		4년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 100-77
이 사	오 속 근		"	"
"	김 형 덕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989 삼부 APT 10동 141호
"	조 풍 연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00-37
"	류 승 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129-3
"	정 우 영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산7
"	조 성 국		2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10
"	채 수 복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56-3
"	이 창 섭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86-23
"	전 진 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
"	김 양 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8-2
감 사	한 상 구		1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2-12
"	최 문 규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우성 APT 12동 802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 6.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 7.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 11.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4. 9.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7.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 7.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 1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 4.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 7.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 10.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6.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 특별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한 일반 직원 특별채용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10.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 8.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 11.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7.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충남산업대학교” 및 “대전전문대학” 과 “대전전문대학 부속유치원” 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청운대학교” 및 “대전대학” 과 “대전대학 부속유치원” 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9.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3.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12.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 3.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3.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7.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는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2001. 12. 31)」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부교수 : 6년

나. 조교수 : 3년

다. 전임강사 : 2년.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 7. 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제3조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5. 2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및 제70조는 2009.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6.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1.12.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34조, 제36조, 제41조 변경규정은 2012. 2. 21.부터, 제3조, 제20조의5, 제80조의제1항 및 제3항, 제81조의제1항, 제82조제1항 변경규정은 2012. 3. 1.부터, 제39조제2항 변경규정은 2012. 7. 21.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제77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및 제78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50조 변경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변경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 개정 내용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13명</b>
<b>일반직 계</b>		<b>5명</b>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b>기술직 계</b>		<b>4명</b>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b>기능직 계</b>		<b>4명</b>
	7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1명
	10등급	1명

(별표 2) 청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4.12.10>

<b>총 계</b>		<b>138</b>	<b>명</b>
<b>일반직 계</b>		<b>101</b>	<b>명</b>
	2급	1	명
	3급	1	명
	4급	4	명
	5급	13	명
	6급	20	명
	7급	25	명
	8급	20	명
	9급	17	명
<b>기술직 계</b>		<b>16</b>	<b>명</b>
	5급	2	명
	6급	4	명
	7급	4	명
	8급	3	명
	9급	3	명
<b>별정직 계</b>		<b>2</b>	<b>명</b>
	예비군연대장(4급대우)	1	명
	예비군대대장(5급대우)	1	명
<b>기능직 계</b>		<b>19</b>	<b>명</b>
	6등급	2	명
	7등급	7	명
	8등급	5	명
	9등급	5	명

(별 표 3) 혜전대학 일반직원 정원<2019. 6. 24.개정>

<b>총 계</b>		<b>60</b>	<b>명</b>
<b>일반직 계</b>		<b>43</b>	<b>명</b>
	2급	1	명
	3급	1	명
	4급	4	명
	5급	9	명
	6급	10	명
	7급	7	명
	8급	5	명
	9급	6	명
<b>기술직 계</b>		<b>9</b>	<b>명</b>
	5급	1	명
	6급	2	명
	7급	2	명
	8급	2	명
	9급	2	명
<b>별정직 계</b>		<b>1</b>	<b>명</b>
	예비군중대장(6급대우)	1	명
<b>기능직 계</b>		<b>7</b>	<b>명</b>
	6등급	2	명
	7등급	1	명
	8등급	2	명
	9등급	2	명

(별표 4) 혜전대학 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4	명
일반직 계		2	명
	7급	1	명
	8급	1	명
기능직 계		2	명
	9등급	1	명
	10등급	1	명

작성자 : 구본익

확인자 : 송덕근